

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95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3. 10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3. 10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3. 20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」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범위를 정비(안 제2조)
- 나.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토록 명시하고, 안전 등 긴급지원은 지원 제한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신설(안 제4조)
- 다.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(안 제5조)
- 라.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를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“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” 통합 운영에 따라 “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”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(안 제6조~제9조)
- 마.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변경, 심사표·홈페이지 공개·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 등을 신설 (안 제11조, 별표1, 별표2)
- 바. 관리주체가 사업비 집행시 사업자 선정 및 입찰 방법 등을 신설 (안 제11조의2)
- 사.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확정시 적합여부를 현지조사하여 결정토록 신설 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당초예산 확보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: 성별영향평가(건축개발과-4260호)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(복지지원과-4964호)

라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20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01. 27. ~ 2023. 02. 17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첨부

5) 비용추계서 : 첨부

5. 본문: 붙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개정목적 및 제출자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전임.

○ 주요내용 검토

- (안 제2조) 개정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)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, 지원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, 안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기준 변경안 [별표 1]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[별표 1] 공동주택 지원 기준 개정 요약

세대수 구분	현재 사업비 지원		개정 안	
	지원비율(%)	상한액	지원비율(%)	상한액
<u>150 이상(신설)</u>	-	-	<u>50%</u>	<u>5천만원</u>
100 이상 ~ <u>150 미만</u>	50% 이하	4천만원	<u>150세대 분리</u>	
50 이상 ~ 100 미만	60% 이하	3천만원	변경없음	변경없음
30 이상 ~ 50 미만	70% 이하	2천만원		
30 미만	80%	1천만원		

- (안 제5조) 공동주택 관리비용 적용 대상에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, 승강기, 외벽 균열보수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 ~ 제9조)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심의를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5조에서 규정한 ‘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’가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11조 ~ 제11조의2) 안 제6조 ~ 제9조의 폐지와 관련하여 심의기구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심사표, 결과공개, 이의신청 절차, 사업자 선정 방식, 입찰대행 등 지원사업 결정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, 신설하고자 하는 [별표 2]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중 감점분야는 감사 지적, 지원사업 부실 사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점에 비해 다소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중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4조)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조금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,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변경안, 선정평가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,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, 최근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공동전기 요금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, 이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의견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수정가결 함.

- 붙 임: 1. 수정안 제안서
2. 「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안
3. 수정안 대비표

「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595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23. 3. 10.
제 출 자	고 성 군 수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지원대상의 형평성 제고와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별표 2의 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6조제2항 관련)” 을 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11조제1항 관련) ” 으로 하고 감점란의 배점을 “-5” 에서 “-10” 으로 수정함.

「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별표 2의 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6조제2항 관련)” 을
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11조제1항 관련) ” 으로 하고
감점란의 배점을 “-5” 에서 “-10” 으로 수정함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					수 정 안					
■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[별표 2]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6조제2항 관련)						■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[별표 2]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(제11조제1항 관련)					
분 야	평 가 부 문	평 가 항 목	배 점	득 점	비 고	분 야	평 가 부 문	평 가 항 목	배 점	득 점	비 고
감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0년간 내·외부 감사 지적, 10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 	-5		-	감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	-10		-